

의안번호	2215060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5.12.23.
추계번호	25G68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 1명당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4,918억원, 2031년 3,791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2조 401억원(연평균 4,080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자녀세액공제 확대 (안 제59조의2①)	-4,918	-3,494	-3,118	-3,167	-3,217	-17,914	-3,58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안 제59조의4③)	-	-666	-640	-607	-574	-2,487	-622
합계	-4,918	-4,160	-3,758	-3,774	-3,791	-20,401	-4,08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공제의 공제금액 상향조정 - (현행)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 - (개정안)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35만원, 2명 연 6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6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50 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

2	안 제59조의4제3항 (특별세액공제)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 (현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 - (개정안)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자녀 3명 이상 가구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u>						
		<table><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세액공제 대상범위</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자녀 3명 이상 가구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u></td></tr></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자녀 3명 이상 가구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u>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자녀 3명 이상 가구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등 지출액</u>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2제1항(자녀세액공제)	○	-
2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자녀세액공제)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 (교육비 세액공제) 개정안의 효과가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개정안이 2026년 중 의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어 2028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녀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1) 감면 실적

-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4,952억원, 3,351억원임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이후 4년(2019~2023년)간 연평균 1.2% 감소
 -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9~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 대상자가 축소(7세 이상→8세 이상)됨에 따라 2023년 세액공제 규모는 전년 대비 8.1% 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이후 4년(2019~2023년)간 연평균 3.4% 증가
 -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9~2022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2.1% 증가했으며, 2023년은 대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5% 증가

[표 2]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근로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2,115 (-20.3%)	2,124 (0.4%)	2,153 (1.4%)	2,207 (2.5%)	2,057 (-6.8%)	2,207 (-0.7%)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5,200 (-26.4%)	5,185 (-0.3%)	5,259 (1.4%)	5,386 (2.4%)	4,952 (-8.1%)	5,169 (-1.2%)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1,168 (-15.5%)	1,117 (-4.4%)	1,213 (8.7%)	1,240 (2.2%)	1,351 (9.0%)	1,190 (3.7%)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2,932 (-21.7%)	2,802 (-4.5%)	3,034 (8.3%)	3,118 (2.8%)	3,351 (7.5%)	2,985 (3.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2023년 귀속기준 소득규모별·자녀수별(1명, 2명, 3명 이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 자료(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공제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귀속기준 자녀수별 세액공제금액을 현행(2025년) 기준으로 조정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비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의 기본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 터 30만원)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므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금액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2023년 기준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재추정
-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계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 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
 - 국세청의 소득규모별·자녀수별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제외) 인원 및 금액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하여 1인당 추가 세액공 제금액 도출 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전 체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 적용 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 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세수효과 규모가 현행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추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복자) 제외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세액공제금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2023년 이후 세수효과는 제도변화가 없었던 최근 3년(2019~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을 따를 것으로 가정
 - 근로소득세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자녀세액공제액 증가율 사용

(3) 추계 결과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3년 귀속 기준 2,8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근로소득세는 1,620억원, 종합소득세는 1,233억원 감소 예상
 -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

[표 4]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세액공제 인원 ¹⁾				1인당 세액공제액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세수효과 ³⁾ (억원)
	합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현행 ²⁾	개정안		
	A0	A1	A2	A3	B	C	D=C-B	E=-D×A0
합계	1,547,342	842,021	627,294	78,027	0.41	0.51	-	-1,620
1천만 이하	0	0	0	0	-		-	-
1.5천만 이하	0	0	0	0	-		-	-
2천만 이하	134	134	0	0	0.04	0.05	0.02	0
3천만 이하	13,249	13,110	139	0	0.22	0.31	0.09	-8
4천만 이하	57,196	47,203	9,840	153	0.30	0.39	0.10	-56
4.5천만 이하	51,127	34,617	15,750	760	0.35	0.45	0.10	-51
5천만 이하	73,527	45,396	25,875	2,257	0.38	0.48	0.10	-76
6천만 이하	188,140	107,192	72,488	8,460	0.40	0.50	0.10	-197
8천만 이하	429,506	221,472	183,980	24,054	0.42	0.52	0.11	-454
1억 이하	321,668	161,246	140,464	19,959	0.43	0.53	0.11	-343
2억 이하	374,625	191,827	162,514	20,284	0.42	0.52	0.11	-396
3억 이하	27,581	14,286	11,844	1,450	0.42	0.52	0.11	-29
5억 이하	8,022	4,181	3,364	476	0.42	0.53	0.11	-9
10억 이하	2,231	1,187	896	148	0.42	0.53	0.11	-2
10억 초과	337	169	141	27	0.44	0.54	0.11	0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녀세액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출산입양공제 적용자 제외)로,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국세청 제출)을 반영하여 추정함

2)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기준의 1인당 세액공제액 추정치

3)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현행 세액공제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세수효과 ²⁾ (억원)
	합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현행 ¹⁾	개정안		
	A0	A1	A2	A3	B	C	D=C-B	E=-D×A0
합계	1,274,433	706,989	491,138	76,306	0.41	0.51	-	-1,233
1천만 이하	121,974	81,742	35,463	4,769	0.36	0.46	0.10	-7
2천만 이하	237,700	139,291	85,853	12,556	0.39	0.50	0.10	-249
3.5천만 이하	276,309	155,442	103,642	17,225	0.41	0.51	0.11	-294
4천만 이하	66,542	36,230	26,056	4,256	0.41	0.52	0.11	-71
5천만 이하	105,947	56,835	42,281	6,831	0.42	0.52	0.11	-113
6천만 이하	83,465	43,488	34,556	5,421	0.42	0.53	0.11	-89
8천만 이하	123,385	62,184	52,878	8,323	0.43	0.53	0.11	-132
1억 이하	73,176	37,348	31,045	4,783	0.42	0.53	0.11	-78
2억 이하	126,422	64,690	53,811	7,921	0.42	0.53	0.11	-135
3억 이하	28,480	14,495	12,083	1,902	0.43	0.53	0.11	-31
5억 이하	17,809	8,793	7,772	1,244	0.43	0.54	0.11	-19
7억 이하	6,004	2,992	2,555	457	0.43	0.54	0.11	-6
10억 이하	3,582	1,734	1,551	297	0.44	0.55	0.11	-4
10억 초과	3,638	1,725	1,592	321	0.45	0.56	0.11	-4

주: 1)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기준의 1인당 세액공제액 추정치

2)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세수효과는 2023년 귀속 기준 세수변화분에 최근 공제금액 증가율과 징수시점 등을 반영하여 추계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는 2026~2031년 6년간 1조 8,6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6] 자녀세액공제 확대 시 세수효과: 2026~2031년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678	-1,698	-1,718	-1,738	-1,759	-1,780	-10,371	-1,728
종합소득세	-1,311	-1,338	-1,366	-1,394	-1,423	-1,452	-8,284	-1,381
합계	-2,989	-3,036	-3,084	-3,132	-3,182	-3,232	-18,655	-3,109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4,918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조 7,914억원(연평균 3,5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7년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7년 2월) 및 202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7년 5월)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¹⁾

[표 7] 자녀세액공제 확대 시 세수효과: 2027~2031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952	-2,143	-1,738	-1,759	-1,780	-10,371	-2,074
종합소득세	-1,967	-1,352	-1,380	-1,408	-1,437	-7,543	-1,509
합계	-4,918	-3,494	-3,118	-3,167	-3,217	-17,914	-3,583

1)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7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7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7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8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8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조세지출 실적

- 2023년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74.4만명, 공제세액 8,512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적용인원(7.6% ↑) 및 공제세액(1.3% ↑) 증가 추세

[표 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¹⁾
적용인원	2,747	2,203	2,241	2,575	2,744	2,441
(증가율)	(4.5)	(△19.8)	(1.7)	(14.9)	(6.6)	(7.6)
공제세액	10,704	8,194	8,345	8,350	8,512	8,350
(증가율)	(△2.5)	(△23.4)	(1.8)	(0.1)	(13.6)	(1.3)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1) 2020~2023년 평균

자료: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 및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재정패널조사」(제16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상의 가구별 소득, 교육비 지출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변경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따른 세부 공제내역이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²⁾
 - 「재정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국가데이터처·교육부)의 소득별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를 활용함³⁾

2)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상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함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202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의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한 추정치에 대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관련 실적치와의 관계를 반영하여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공제를 신청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미시자료에는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및 결정세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재정패널조사」 추정치는 「국세통계연보」 실적치보다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 대비 실적치 비율(이하 '조정비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7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 비중(2023년 459만 가구 중 14.5만 가구, 9.5%)을 적용함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만 7~18세 인구(초·중·고등생)의 연도별 증감률⁴⁾을 적용함

(3) 추계 결과

- (조정비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현행 제도 하의 「재정패널조사」 추정치에 대한 「국세통계연보」 실적치의 비율은 대상인원 전체는 0.82, 대상금액 전체는 0.53으로 계산됨

3)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학교급별 학원비 지출액 비중을 반영함

4) ('28년) -3.6%, ('29년) -3.9%, ('30년) -5.1%, ('31년) -5.5%, ('32년) -5.9%

[표 9]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대상 인원·금액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 ¹⁾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전체	3,136	104,835	15,725	2,575	55,668	8,350	0.82	0.53
1천만 이하	46	744	112	—	—	—	—	—
1.5천만 이하	69	2,463	369	0	0	0	0.00	0.00
2천만 이하	78	1,527	229	1	6	1	0.02	0.00
3천만 이하	270	9,252	1,388	53	285	43	0.20	0.03
4천만 이하	332	10,546	1,582	148	1,389	208	0.45	0.13
4.5천만 이하	168	4,933	740	128	1,669	250	0.76	0.34
5천만 이하	165	5,044	757	157	2,307	346	0.95	0.46
6천만 이하	362	10,531	1,580	356	5,827	874	0.98	0.55
8천만 이하	608	18,532	2,780	663	12,545	1,882	1.09	0.68
1억 이하	460	16,354	2,453	451	11,838	1,776	0.98	0.72
2억 이하	530	22,932	3,440	543	16,744	2,512	1.02	0.73
3억 이하	31	1,379	207	49	2,002	300	1.59	1.45
5억 이하	9	430	65	16	711	107	1.84	1.65
10억 이하 ²⁾	6	133	20	6	268	40	1.00	2.01
10억 초과 ²⁾	1	35	5	1	77	12	1.00	2.20

주: 1) 실적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결정세액 있는 자의 자료임

2) 과세대상 총급여 5억원 초과인 경우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1조 6,492억원이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액이 현행(8,512억원) 대비 7,980억원 증가하며, 동 조세지출 증가분에 대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비중(2023년 9.5%)을 적용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 75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0]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3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현행 대비 세수효과 ²⁾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P=F-N	P×9.5%
	D	E	F	L	M	N=M×0.15	P=F-N	P×9.5%
전체	2,744	56,747	8,512	3,742	109,948	16,492	-7,980	-757
1천만 이하	-	-	-	-	-	-	-	-
15천만 이하	0	0	0	0	0	0	0	0
2천만 이하	2	7	1	2	13	2	-1	-0
3천만 이하	57	262	39	84	537	81	-41	-4
4천만 이하	145	1,122	168	206	2,519	378	-209	-20
45천만 이하	120	1,372	206	177	3,217	483	-277	-26
5천만 이하	153	2,045	307	199	3,874	581	-274	-26
6천만 이하	362	5,532	830	507	11,884	1,783	-953	-90
8천만 이하	706	12,731	1,910	1,008	27,419	4,113	-2,203	-209
1억 이하	508	12,487	1,873	642	23,984	3,598	-1,725	-164
2억 이하	612	18,049	2,707	829	32,481	4,872	-2,165	-205
3억 이하	53	2,045	307	64	2,772	416	-109	-10
5억 이하	18	758	114	16	902	135	-22	-2
10억 이하	6	267	40	6	268	40	-0	-0
10억 초과 ¹⁾	1	68	10	1	77	12	-1	-0

주: 1) 과세대상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개정안에 따른 모든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른 공제세액 모두를 세수효과가 되는 것으로 함

□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2028년 666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2,487억원(연평균 622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안 제59조의4제3항)	-	-666	-640	-607	-574	-2,487	-622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